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원칙화〉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47호)

2026.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47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원칙화(안 제74조의2제2항 등)	3

□ 김남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447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근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6. 6. 23.

3. 회 부 일 : 2026. 7.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20세기 초 미국의 공정경쟁법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일종인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 제도는 최소한 3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해야 고의적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위하적 효과가 있다는 경제학계의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고의 또는 악의

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실손해의 3배로 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액수로 판결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설계되었음. 그러나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를 계수하는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3배 이내”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에 맡겼는데, 실손해 배상제도에만 익숙해져 있는 법원은 실손해 위주의 일반 손해배상 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규모 등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하는 요소들이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이유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Ⅲ. 검토의견

1.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원칙화(안 제74조의2제2항 등)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실손해 인정 금액의 5배를 원칙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되, 법원이 고의성의 정도 등 법정 고려사항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생략)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u>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배상 책임을 진다.	② ----- ----- ----- ----- ----- ----- ----- ----- <u>5배의</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원은 <u>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u> 다음 각 호의 사	④ ----- <u>제2항에도 불구하고</u> ----- <u>고려하</u>

현행	개정안
항을 <u>고려하여야 한다.</u> 1. ~ 7. (생략) ⑤ ~ ⑦ (생략)	<u>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u> 1. ~ 7.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¹⁾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제1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대하여 전보적 손해배상²⁾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전보적 손해배상이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그대로 메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말함.

제2항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① 고의성의 정도, ② 손해의 정도, ③ 경제적 이익, ④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⑤ 공급 기간 및 규모, ⑥ 재산상태, ⑦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 7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또한 피해자가 ① 정상적 사용 중 손해 발생, ② 제작자등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손해 초래, ③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 및 인과관계가 추정됨³⁾.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2020. 2. 4. 개정(법률 제16950호)으로 신

3)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결함으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규모
6.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재산상태
7.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설되었으며, 자동차제작자들의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강화, 결함의 조속한 시정 유도, 소비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악의적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적 목적과 재발억제라는 예방적 목적이 민사책임에 혼용된 손해배상제도임. 이는 행위자의 고의의 비난가능성에 주목하여 전보배상액보다 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영미법상의 제도임⁴⁾.

최근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급발진 의심 사고, 전기차 화재 등 안전 관련 결함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실제 운용에서 징벌적 배상액이 낮게 산정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들이 결함을 조기에 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리콜을 실시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제작결함 신고 건수(중복포함)는 2023년 6,180건, 2024년 7,785건, 2025년 9,129건, 2026년 6월까지 3,74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접수된 26,838건 중 9,580대에 대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리콜 조치가 이루어졌음.

<제작결함 신고 현황>

	2023년	2024년	2025년	2026.06	계
제작결함신고	6,180건	7,785건	9,129건	3,744건	26,838건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현행 제74조의2제2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하여 법원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실손해 배상 원칙에 익숙한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실손해에 근접한 수준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경향이 있음⁵⁾.

이에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실손해 인정 금액의 5배를 원칙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되, 법원이 고의성의 정도 등 법정 고려사항을 이유로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예방적·억지적 기능을 실질화하고,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제작자등의 적극적 대처를 유도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입법 취지와 실제 운용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3배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2020년 8월 기준 청구 16건 중 인용은 1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1.5배 배상에 그쳤는데, 이는 개인책임주의·실손배상원칙·사법과 공법의 엄격한 분리를 대원칙으로 하는 대륙법체계상 우리 법원이 징벌적 배상 명령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대한전문건설신문, 「법원서 힘 못쓰는 ‘3배수 손해배상제’」, 2021.3.15.).

다만, 다음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법원의 배상액 결정 재량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음.

손해액의 5배를 원칙으로 고정하고 법원의 역할을 예외적 감액사유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데 한정할 경우, 법원의 배상액 산정의 출발점이 5배로 고정되어, 법원의 재량이 감액 여부 및 감액 폭의 판단으로 제한됨.

또한 법원은 현행 구조에서 고의성의 정도, 피해 규모,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종합적 고려를 감액 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으로 제한함으로써,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비례적·탄력적 운용을 어렵게 할 수 있음.

둘째, 타 법률과의 법체계적 정합성의 문제가 있음.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는 주요 법률인 「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 보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은 모두 손해액의 3배 또는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참고 참조).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만 5배를 원칙적 배상액으로 정하고 감액을 허용하는 구조를 채택할 경우, 동일한 불법행위 유형에 대

하여 적용 법률에 따라 배상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법적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등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셋째, 소송 남용이 우려됨.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과다하게 제기될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방어 비용 증가와 소송 남용으로 인한 사법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자동차 가격 상승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예방적 기능을 실질화하는 효과와 법원의 재량권 축소, 타 법률과의 법체계적 정합성, 소송 남용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손해배상액의 실질적 상향을 통해 자동차 결함에 대한 제작자등의 적극 대처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헌법 등 현행 법률적 체계의 원칙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등 법률 체계상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는 주요 법률에서는 손해액의 3~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체계적 정합성 고려 필요함.

징벌적 손해배상액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제기와 관련 소송이 과다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관련 단체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도 필요함.

2) 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피해자인 원고하게 과도한 확정적 이익을 부여하고, 확정적 다액배상금에 따른 도박적 소송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비례의 원칙 약화) 일반적인 법률 체계상 과징금, 배상액 등 제재 금액은 책임의 경중과 제재의 비례를 위해 법률에서 최고 한도를 정하고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손해배상액을 5배로 고정할 경우 헌법의 일반적인 원칙인 비례성의 원칙과 사법재량권 약화 소지가 있음.

(제작사 입증 부담 가중)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피해자)가

손해의 발생, 손해액 및 피고의 위법행위 등을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해배상액을 법률로 먼저 정하고 감경하는 절차에서는 제작사의 실질적인 방어권이 제약되고, 실제 위법성의 정도나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무분별한 소송 급증 등) 손해배상액이 5배로 고정될 경우 소송의 경제적 유인으로 블랙컨슈머·기획소송 급증 및 무분별한 소송 남발 예상, 감경 요건에 대한 대립으로 소송의 장기화 등이 우려됨.

4) 수입자동차협회

(비례원칙 제한) 손해액의 5배 배상을 원칙으로 할 경우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비례원칙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법원의 재량 축소) 입법자가 법률에서 5배 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이상, 법원은 배상액 결정 권한 대신 감액 사유의 존재 여부만을 판단하게 되어 재량범위가 축소됨.

(법체계적 정합성) 유사 목적의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손해액의 3~5배 이내 배상액)의 법체계적 정합성 고려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75

<제조물 책임법> (법무부 /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제조물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